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674
----------	-----

2021. 4. 30.(금)
교 육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: 충청북도교육감

나. 제출일자: 2021년 4월 13일

다. 회부일자: 2021년 4월 16일

라. 상정일자: 2021년 4월 23일

(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수정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기획국장 구본학)

가. 제안이유

- 학교 운동장의 안정성 실태조사 등에 대한 규정을 의무화하여 유해 중금속과 환경호르몬 등으로부터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장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유해성 조사에 대한 의무규정 및 검사 위탁 사항 정비(안 제5조)
 - 학교운동장 유해성 조사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(안 제5조제1항)
 - 실태 조사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제2항)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홍만표)

- 본 조례 개정안은 유해 중금속과 환경호르몬 등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학교운동장 유해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면서, 필요한 경우 실태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: “수정가결”

7. 수정안 요지

○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1. 4. 23. / 김영주 의원

○ 수정이유

-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되, 필요한 경우 수시로 유해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기존 조례안 및 상위법령의 내용과 통일성을 기하도록 수정하고자 함.

○ 수정내용

- 제5조제1항 중 “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” 를 “학교” 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필요한 경우 수시로 유해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- 제5조제2항 중 “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” 을 “외부 전문기관에 의뢰” 로 한다.

8. 소 수 의 견 요 지: “없 음”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“없 음”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:

-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원안)
-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수정안)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원안)

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학교”를 “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”로, “실시할 수 있다”를 “실시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실태 조사)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<u>학교</u> 운동장의 유해성 조사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3년마다 <u>실시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5조(실태 조사) ① ----- ----- ----- <u>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</u> ----- ----- <u>실시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

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수정안)

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” 를 “학교” 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필요한 경우 수시로 유해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5조제2항 중 “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” 을 “외부 전문기관에 의뢰” 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5조(실태 조사)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<u>학교</u> 운동장의 유해성 조사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3년마다 <u>실시</u>할 수 있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5조(실태 조사) ① ----- ----- ----- <u>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</u> ----- ----- <u>실시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5조(실태 조사) ① ----- ----- ----- <u>학교</u> ----- ----- <u>실시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수시로 유해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</u></p>

관계법령

□ 학교보건법 시행규칙[교육부령 제194호, 2019.10.24., 일부개정]

제3조(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) ① 「학교보건법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·관리해야 하는 학교시설[(校舎 垚地)·체육장·교사·체육관·기숙사 및 급식시설,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 한다. 이하 같다]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의2.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.

②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.

제3조의2(검사요청 등) ① 법 제4조에 따른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·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점검방법의 지도 및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학교에 대하여 오염물질을 직접 검사하게 하거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.

※ 학교보건법 시행규칙[별표 2의2]

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(제3조제1항제1호의2 관련)

1. 체육장 등의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는 「산업표준화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

2. 제1호에 따라 설치한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의 파손 여부,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, 필요한 조치를 할 것